〈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기조강연]

21세기 한국법학의 지향 목표* **

安 京 煥*

1. 글머리에

우리나라에 '근대법학'의 씨앗이 뿌려진지 1세기가 넘었고,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지도 환력에 접근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기적을 이룬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정평을 얻고 있다. 2차 대전 후에 탄생한 신생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룬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가 따른다. 최근 'UN이 만든 나라에서 UN의 수장이 탄생'한 사실도 이러한 상징의 극대가 될 수 있다. 지난 60년간에 걸친 한국의 성장에 법학이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최소한 민주주의의 정착에는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치르지는 이 행사는 한국법학이 성장해온 과정보다는 장래를 향해 나갈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 주 10월 13일 '변화와 비전'이라는 대주제로 대학본부의 주관으로 열린 학술심포지엄과도 궤를 함께 한다.[1)]

대저 법과 법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한국법학의 지향목표"라는 이 주제 또한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

* 이 글은 2006. 10. 20 (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이 후원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에서 발표한 것을 가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신용하 "서울대학교 60년: 변화와 과제" **서울대 60년: 변화와 비전**,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6. 10. 13). pp.1-14.

특히 법학교육의 방법론과 법학전문대학원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는 문헌들이 많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관심을 표한 외국 법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2] 필자 자신도 여러 차례 당시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3]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추출하여 장래의 법학교육에 관한 필자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한다.

2. 논의의 출발: 법학교육의 목표와 이상

제도는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학이, 그것도 대학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학의 연구와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또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소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때는 법이 시대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의 규범의 집적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학이 '규범과학'인 동시에 '실천과학'이라는 점에는 대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4] 법의 실천은 규범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양자 사이의 비중과 정도의 차이 뿐이다. 법이 규범과학인 동시에 실천과학이라면 법학교육을 통해 전승시키고자하는 규범력과 실천력은 무엇인가? 전자에 비중을 두게 되면 시대의 부침에 흔들리지

2) 로버트 클락, 김건식 역, "세계화 시대의 법률과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37권 3·4호 (1996) pp.93-108; John Haley, "Asian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ative View" **서울대학교 법학**, 34권 2호 (1993) pp. 1-8; Toyo Atsumi, 윤달중 역, "법학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7호) 1997 pp.61-77

3) 안경환, "대학원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1호 (1992), pp.22-33; 안경환,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사회** 9호(1994), pp.48-62; 안경환,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pp.1-7; 안경환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 **동아법학** 제37호(2005), pp.277-288; Kyong-Whan Ahn, "Law Reform in Korea and the Agenda of Graduate Law School," 24 *Wiscon Int'l L. J.* 223 (2006) pp.213-237.

4)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철학연구** 9권 1호(2006년), pp.7-14. "법은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목적지향적 작품으로 정신적 형성물이다. 이의 일차적 목적은 인간행위의 조종을 통한 질서수립이다. 이를 위해 법은 스스로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로 표현된 규범텍스트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또 법은 또 사회적 현실로서 법목적의 사회적 실현 내지 작용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은 하나의 '현실(사회)과학', '사회공학' '실천과학'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않은 인간의 기본적 심성과 덕목의 배양에 주력할 것이고[5] 후자에 비중을 둔다면 구체적인 갈등은 해결하는 지식의 체계와 적응력을 중시할 것이다. 전자는 이상적인 지성과 덕목을 구비한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후자는 '사악한 보통사람'(ordinary bad man) (Oliver Wendell Holmes Jr.)의 세계에서[6] 경험적 선을 연마하는 실천적 지식과 지혜를 연마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은 자의적인 것일 뿐이고, 더더구나 개념적 구별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경험적으로 상호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한 때 법이 국경을 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국지성을 거론하던 시절이 있었다.[7]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물러나고 있음은 별도의 지적이 필요하지 않다.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법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는 시대임은 너무나 숙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가는 나라 안의 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공동체인 국제무대에서 합리와 이성의 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해야 한다.[8] 20세기 후반 이래로 인류가 분쟁을 해결하는 주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농후해졌다.

세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개방, 교류, 융화의 길을 내딛고 있다. 법의 세계에서도 대륙법과 영미법, 국제법과 국내법, 공법과 사법 등 종래의 분류가 무너지고, 차이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제적 차원에서 법률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북한과의 통일 내

---

5) 이를테면 양승규, "법학교육의 목표와 교수방법론" 1-10. 법학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의 법학교육 -개혁과 반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 제1호(1992. 3), pp.1-7. "인간화의 실현", "정의의 실현"에 있다.

6) Holmes, *The Common Law* (1881) Lecture IV.

7)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1973, 1985) 이 저술은 법은 '사회의 거울'(mirror of society)라는 전제에서 특히 경제가 법에 미친 영향을 비중을 두어 탐구한다. 그러나 Friedman도 후일 견해를 수정하여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04년 제3판) Part IV.

8)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pp.8-20. "법학은 평화(peace), 정의(justice), 인권(human rights), 복지(welfare), 민주화(democratization) 등 인간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규범과학으로 거듭나서 … 발전하고 있다."

9) 송상현, 같은 글, pp.9-10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짝지어 상호보완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공사법의 구별이 무의미해진지 오래이고". "영미법과 대륙법의 구분" 또한 그러하다.

지는 평화공존의 모색, 아세아제국, 특히 중국접경국가와의 동맹과 협조 등[10]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법학교육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이상이 정립된 이상,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제도, 구체적으로 법학교육을 어떤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법학에 필요한 교과과정은 이른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든 아니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든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의 전환'에 모든 것을 걸고, 'all or nothing'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전시켜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교육을 위해 열린 눈과 마음으로 개인적, 기관적 차원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법학의 근본성격

(1) 서비스 학문

법학은 '서비스'를 위한 학문이다. '사법도 서비스'인 나라가 법치국가, 민주국가라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기를 지나 진부한 감이 들기까지 한다.[11] 한 나라 법제도의 성패는 국민에게 어떤 내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기에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법률가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할 것인가는 나라 안의 사법정의의 확립과 선진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법률가들의 개인적 자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대한 이유는 법률가를 교육, 양성하는 과정이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사법의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참여권[12]의 논의가 가속되었다.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정원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법률가의 지속적인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척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

10) 안경환, '오랑캐들의 합창', 다산포럼 2005, 2. 4. 출처: www.dasanforum.com

11) 권오승, **사법도 서비스다- 법조개혁**, 미래미디어, 1996.

12) 이를테면 배심제의 도입에 관련된 논의 등이다.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국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서비스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전통적 의미의 민, 형사사건, 그것도 소송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의 법률서비스는 일상적, 예방법 법률 시대의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다.

(2) 통합적 지적 체계로서의 법학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문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법학은 '문과'로, 보다 세분하면 '사회계열'로 분류된다. 현대사회에서의 법학은 문과 또는 이과 어느 특정 분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학문의 새로운 시대적 추세가 종래의 세분된 영역에 한정된 연구와 교육을 고수할 수 없게 만든다. 이른바 '학제적' 연구라는 연구방법론이 새로운 보편적 방법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조화, 융화, 융합, 통섭(統攝)[13] 등등의 이름으로 논의,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적 공조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자구책이기도 하다.[14]

법학은 속성적으로 학제적 성격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법은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고 사회의 현상은 원인이 다양하다. 개별적인 법률서비스는 구체적인 문제에 한정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양하기 짝이 없고 어떠한 분류로도 묶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의 학문은 현실적인 사회제도를 덜 유념하거나, 유념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들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절대성으로 표현한다면 법학의 임무는 현실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상대성에 있다. 법학은 여타 학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적인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합리적인 지식의 총체이다. 그런데 특히 현대사회의 인류의 삶의 물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자연과학의 기여는 절대적이다.[15] 그만큼 자연과학과 법학의 결합이 중요하다.

법학의 역할이 무엇인가? 법학이 그 자체로서 자족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보유하는 독립된 학문인가, 아니면 다른 학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정한 답을

---

13) Edward Osborne Wilson, *Consilience: The Utility of Knowledge,* Random of Knowledge Random House (1999) 최채천 외 역, **통섭(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2005.

14) 김광웅, "미래의 학문, 대학의 미래"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pp.57-106.

15) 안경환, "21세기 인간상과 기본권" **헌법학연구** 5-2, 1999, pp.5-15; 안경환, "과학기술시대의 법", 한겨레신문, 2005년 2월 24일.

제공하는 지식의 체계인가? 법학이 다른 학문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것은 '제도화'를 위한 지식의 체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철학과 '법'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16] 철학자가 현실의 제도에 무관하게 (또는 덜 유념하고) 인간과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의 탐구에 정진한다면 법철학자의 임무는 입법자, 판사, 행정가 등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의 운용에 바탕인 되는 덕목과 지혜를 전달하는 데 있다.[17] 법학의 특성은 모든 이론을 현실의 제도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이라는 점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자면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 다시 말하자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법학은 통합학문이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범위와 성격은 어떤 기준이나 분류로도 한정할 수 없는 총합적 지적체계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학은 사학, 철학, 물리학, 공학, 미술 여타의 학문과 '나란히' 병렬적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학문 '위에' 서서, 이들 학문의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적 제도를 건설, 운용하는 지적체계가 법학이다.[18] 이러한 속성을 법률서비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복잡, 다양한 현대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21세기 법학교육의 지향

(1) 통합성

통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사과정을 수료한 선행학습자를 상대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

16) 법학교육에서 "법철학"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의에 대해서는 장태주, "교육과 우리 사회: 법학교육의 과제", **사회이론** 21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222-247 참조.

17) 이런 관점에서 법철학자 Ronald Dworkin이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 평가되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순수한' 철학자의 경우와 달리 Dworkin의 연구는 구체적인 법이론이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그를 '법'철학자로 만드는 것이다.

18) 미국에서도 흔히 법학교수를 'half-intellectual'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지적논쟁에도 균형감각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는 법률가 지성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학자 집단을 "well-balanced intellectual"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도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그것은 대학원 과정으로서의 법학교육은 학사과정 교육과는 '질적'으로 달라야만 한다는 것이다.[19] 대학원생 법학도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학사과정의 법학도와 다르다. 첫째, 인간적으로 보다 성숙하다.[20] 둘째, 학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지적훈련을 거쳤다.

대학원생을 학생을 상대로 한 법학교육은 일차적인 지적 체계 '위에' 법학이라는 2차적인 지적 체계를 결합시키는 작업이다. 학사과정에서의 법학수학을 전제로 한 현재의 대학원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다.[21] '사법시험과의 절연'이나 '교수 자국양성의 원칙'의 주장도 그 당위를 차치하고서, 현실적인 여건 아래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원 법학교육의 파행성이 드러나 있다.[22]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주된 반대하는 논거는 '실무지향적'이라는 이유[23]와 '반민주적'이라는 이유[24]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이유는 law school 교육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고, 뒤의 주장은 'law school' 제도 자체가 '대중민주주의'의 희생 아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가치 선택의 문제이다.

---

19) 최대권, "대학원-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2002), pp.1-27.

20) 흔히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how to think like a lawyer)을 가르친다는 말로 표현된다.

21) 안경환, 앞의 글들, 주 3.

22) 송상현 교수는 교수입무지침서(faculty manual)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송상현, 앞의 글, 주 8.

23) 심헌섭 앞의 글, 주4, p.13 "훌륭한 법학이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법과대학에서 발전했다. "지식의 분리가 아닌 집성의 장소이며, 전문일꾼이 아니라 인간의 양성을 의무로 여기는 대학"에서 말이다." (Eric Wolf (1953)의 주장을 재인용) "대학교 안의 전문대학원은 보다 성숙한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모두를 기대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에서의 법의 학문적 연구를 망각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에 치우친 교육으로 법률상인만을 양산하여 현대적 바버리즘을 더욱 부채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pp.13-14)

24) 임재홍, "법학교육과 법학교수의 역할" **민주법학** 29호 (2005), pp.233-257. "사법개혁의 민주주의적 과제에 상반되는 것이다. … 다수의 희생 속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신귀족주의사회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할 뿐이다." p.234

대학원 차원의 교육은 이러한 선행학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학이라는 제도를 유념한 실천적 지성을 연마하는 지적융화의 작업이다. 법과 경제, 법과 정치, 법과 예술, 법과 과학기술 등의 작업은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역할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지적작업의 예시이다. 대학원법학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법학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교육방법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질적 제고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law school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법학교육은 단지 수학의 개시시점을 '연기'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못한다.

미국형 law school이 도입될 경우에 당면할 난제 중의 하나는 '법학자'의 양성방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부적인 특정 전공의 영역을 파고들어 오랜 시일에 걸친 수학의 결과를 실체적 지식으로 담아내는 능력을 입증해야만 교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학자양성 방법은 법학의 수학방법과 전통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비록 미국형 law school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특유한 개방형, 방임형 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⑵ 다양성

한국사회가 이룩한 성과의 근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가 기여한 공로가 압도적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창의가 자유롭게 발휘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면 그러한 제도와 운영의 원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의 제고, '화학적' 지적 융합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기조나, 서울대학교가 지향해 온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25] 학문의 세부영역 간의 경계를 완화하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당위는 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학의 연구대상은 사회적 현상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법학교육의 장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상의 축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의 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인적구성에서도 다원화가 이루어져야만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유익하다. 이 점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구성에 공히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 연구, 교육자의 출신 및 교육배경, 성별, 국적에 있어 다원화가 필요하

25) 안경환, "서울대 발전의 비전",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p.114.
26) 안경환, 같은 글, p.115.

고, 학생의 경우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의 다원화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법학에서 기초학문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그런데 '기초학문'이란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초학문'의 개념과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초학문'은 제도적 강제를 통해 전파해야 한다. 법학의 범주 내에서 '기초법'도 마찬가지다 기초법은 법학의 교과과정 속에서 '필수'가 되어야 한다. 전공필수과목을 사법시험과목과 일치시키는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전형적인 교과과정은 대학이 교육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26]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모든 법학도의 필수로 삼아야 할 '기초법'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경제적 생활이 삶의 질에 직결되어 있는 현실[27]을 감안하면 회계학, 경제학, 세법 등을 '필수' 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버드법대의 클라크학장의 주장대로 "제 3의 물결"의 따른 법학의 지각변동은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융성을 불러일으켰고[28] 미국의 주요대학이 이 주제에 대한 지적서비스를 강화한 사례는 강한 시사점을 준다.[29]

과학과 기술이 일상화된 현대에서 자연과학은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짓다시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지적배경의 측면에서 자연과학과 법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Law School의 적성시험은 인문, 사회 전공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시험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에게는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공계 출신에 대한 입학할당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

26) 권오승, "법학교육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 사회**(제9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1994) p.15.

27) 권오승 같은 글, p.7; Friedman, 앞의 책, 주 7, 제3판 제4부 2장.

28) 로버트 클라크, 김건식 역, "세계화 시대의 법률과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3·4호(1996), pp.93-108. 제3의 물결 (third wave)에 수반된 현상으로 "부의 수준의 변화", "복잡하고 공식적인 조직에의 참여" "다양성의 증가" 등등을 들고 있다. p.102-104.

29) 클라크, 앞의 글. "하버드 교수 70명 중 12명이 법경제학 담당교수였다." 송상현, 앞의 글 주 8, p.9. (같은 요지). 송교수는 또한 근래에 들어와서 '주관주의적', '법심리리학적'접근방법이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⑶ 국제무대를 유념한 교육

'Global'이란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와, 국제적인 국경을 빈번하게 넘나들어야 하는 미래 전문가의 삶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의미한다.[30] 국제무대에서 한국대학생의 선호도가 높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의 졸업생을 대학원과정의 학생으로는 대체로 선호하지만, 직접 직업현장에서 수용되는 경우는 희소하다. 우리나라 법과대학의 교과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무대를 유념한 학생의 교육에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나라의 대외적 힘은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을 벌이는 법률가의 수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이미 국제화의 길을 내딛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법이다. 현재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소수의 한국 법률가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대학의 법학을 통해 자질을 배양한 것은 아니다.

국제어를 상용하는 교수요원의 확보와 강좌의 개설, 운영은 법학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선결과제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적 근대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도할 후발 국가들의 인재를 적극 유치, 교육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31]

⑷ 전문성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든 '실무교육'에 치중할 수 없다.

흔히 미국의 Law School 교육이 실무교육에 주력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론교육에 치중한다. 그 이론교육을 위한 재료가 법원의 판례라는 점이 '실무교육'에 주력한다는 오해의 주된 원천인 것으로 여겨진다. 상급법원의 판례들을 통해 법리를 추출해 내고, 이렇게 추출해 낸 법리의 보편성을 검증하는 지적훈련, 그것이 법학교육의 핵심적 내용이다.

대학에 따라 소장의 작성, 의뢰인의 상담, 변론방법(trial advocacy) 등 '실무프로그램'(clinic program)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론교육에 대한 보충으로 행해질 뿐이고, 대학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의 커리큘럼을 전혀 가지지 않는 곳도 많다. 전국적 차원에서 학생이 입학하고 졸업 후에 전국

30) 러플린, *KAIST Vision,* 2005. 2.

31) 신용하, **서울대학교개교60주년기념학술대회 자료집**, p.13. 특히 신교수는 중앙아시아의 국가 등 중국인접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역설한다.

무대에 이른바 '명문대학'에서는 실무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우리나라 법학의 장점 중의 하나는 이론적 분석력이 강하다는 점이다.[32]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이론 속에 함몰되지 않도록 교육 방법론상의 보완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5) 자율성과 재정운용

대학이 자율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곧 '자율적 방만'이나 '자율적 관성' 또는 '자율적 담합'을 초래한다는 의심 또한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기 힘들다. 재정면에서 투명성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교과과정을 비롯한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오히려 경직된 현상유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교육의 원가가 교육의 산출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고유의 의미에서 law school 교육은 '엘리트교육'이다. 교육의 강도에서 지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원가에서도 타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고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흔히 law school의 위상이 그 law school이 소속된 대학 자체의 위상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러므로 많은 대학에서 law school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쏟는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law school이 대학 전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칠판과 분필'의 신화가 살아있는 듯하다. 가장 저렴한 교육비용으로 훌륭한 인간과 법률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아있는 듯하다.

미국의 경우, Law School 수업료도 고액이고 교수의 봉급도 같은 대학 내의 타 분야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봉급의 결정은 학교와 개별교수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며 다른 분야나 교수와의 '형평'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Law School 학장(dean) 직에 대한 인기가 추락한 것도 고액의 봉급을 받는 교수들이 양산된 사실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33]

이러한 미국 Law School의 재정운용의 원칙과 여건을 다른 나라에서 기대하

32) Haley 앞의 글, 주 2. "아시아의 학생들은 case의 분석에 고전하나 미국학생에 비해 법조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이 앞선다." p.6.

33) Daniel Bernstine, 윤달중 역 "법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7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pp.113-121.

기 몹시도 어렵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자금에 대한 정부대여금 제도가 미약한 나라에서는 사적부문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적부문의 기여는 더욱 취약하다.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6. 맺는 말

베스트셀러, 미래학자 Alvin Tofler도 최근의 저서 「Revolutionary Wealth」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느림보 중의 느림보'가 법이라고 했다[34]. 실리콘 밸리의 연대기 작가 Robert Gringly의 표현을 빌려 '고도로 가속화되는 인터넷시간과 사법시간의 격돌'로 묘사한 그는 '시간'이라는 심층기반과 부의 창출 사이의 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어느 사회에서는 법의 주된 기능은 사회의 안정에 있다. 그러나 그 '안정'의 이상이 역동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 특히 강조되는 한국법학의 중대한 과제는 사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수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등 각종 '혁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대, 그 혁명이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어[35]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 국제화, 사법서비스

---

34) Alvin Tofler & Heidi Tofler, 김중웅 옮김,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p.70.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관이 시속 100마일로 달린다면 기업은 100마일, NGO가 90마일, 가족제도는 60마일, 노동조합은 30마일, 정부가 25마일, 학교가 10마일, 국제기구가 5마일, 정치조직이 3마일, 마지막으로 법이 1마일 속도로 제자리에서 맴돈다고 비유했다. 그는 법을 2분하여 법원, 변호사회, Law school, law firm 등을 포함하는 기관과 이 기관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법 그 자체로 나누었다. 양자 모두 관성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그도 법은 속성상 다른 제도에 비해 서서히 변해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의 발전 그 자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35)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 First Century,*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Abstract>

Legal Education in Korea: Goals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Kyong-Whan Ahn*

As Alvin & Heidi Toflers have sarcastically put it in their recent book, Revolutionary Wealth, universities are social institutions which are least perceptive to the changes of the world. Even within universities, law departments are known as the most staunch guards of status quo. Korea is not an exception. There has been wide-spread criticism toward Korean legal education for the last few decades. But little change has been made for the period. A peculiar system of Korean National Judicial Exam bearing little linkage with the university education, has substantially impaired the prestige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law schools. Since 2003, a national agenda of implementing "graduate professional law school" has invited the entire legal society into chaotic battles of various interest groups.

Against such backgrounds,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goals of legal education beyond the comtemporary settings. The author opines his logics based on his own belief in law and legal studies: "law as service", and legal studies as "comprehensive science."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legal service, supply mechanism of the service has to be renovated. Services should be diversified so that no area of life and work of the society be left out.

"Comprehensive science" demands advance studies in various areas prior to legal education. Graduate professional law school might help achieve these goals, only provided that the two critical factors, diversity and global awareness, are met.

Key words: Graduate Professional Law School, globalization, legal service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